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2월 4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2. 19.)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4.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상표의 사용’ 행위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① -----<br>-----.                                          |
| 1. ~ 10.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 -----<br>-----.                                                |
| 가.·나.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신설>                                        | 다. <u>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u> |
| 다. (생략)                                     | 라. (현행 다목과 같음)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최근 5년간 개인 소비자가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물품이 2019년 3.6조원에서 2023년 6.8조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러한 해외 직구 물품 중 위조상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건수 또한 증

가(2021년 2.9만건→2022년 4,5만건<sup>1)</sup>)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sup>2)</sup>

그런데 현재 해외 직구 상품 중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통관보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sup>3)</sup>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관세법」 제235조제1항<sup>4)</sup>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sup>5)</sup>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1)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관세청)

2) '23년 11월 1달간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위조상품 142,930점 적발('24.1.23., 관세청 보도자료)

3) 해외 직구는 통관유형 중 특송, 국제우편과 가장 유사한 형태임.

<통관 형태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현황.

(단위 : 건, 천개, kg)

| 구분      | 2022    |         |         | 2023   |         |         |
|---------|---------|---------|---------|--------|---------|---------|
|         | 건수      | 수량      | 중량      | 건수     | 수량      | 중량      |
| 관리대상 화물 | 86      | 699.77  | 56,130  | 224    | 455.4   | 58,604  |
| 수입 물품   | 313     | 838.58  | 92,161  | 151    | 360.5   | 49,113  |
| 특송 수입   | 5,414   | 73.34   | 12,794  | 6,910  | 110.3   | 17,147  |
| 특송 목록   | 60,369  | 115.13  | 86,353  | 69,525 | 342.9   | 118,578 |
| 국제 우편   | 39,536  | 80.74   | 58,032  | 7,798  | 65.6    | 11,471  |
| 여행자 휴대품 | 165     | 1.64    | 613     | 639    | 5.6     | 2,830   |
| 합계      | 105,883 | 1,809.2 | 306,084 | 85,247 | 1,340.4 | 257,744 |

출처: 2023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 통계보고서(관세청, 2024. 5. 20)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 방향 연구」(특허청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2024.5.)

4)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5)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어야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하는 통관보류조치가 가능한 구조임.

영리성을 전제6)(수입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양도·인도를 전제 조건으로 함7))하므로 개인소비자가 해외 직구 형태로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임.8)

참고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관련하여 일본은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상표법에 규정9)하고 있고(2022. 10. 상표법 개정), EU는 판례10)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11)

이에 개정안은 해외 직구 경로로 위조상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상표권의 침해행위12)로 볼 수 있도록 ‘상표의 사용’ 행위 유형을 정비함으

6)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안」 설명자료('16.2., 특허청)

7)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定價表)·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8)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 방향 연구」(특허청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2024.5.)

9) 일본 상표법 제2조제7항: 이 법에 있어서 수입하는 행위에는 외국에 있는 자가 외국에서 일본 국내로 타인으로 하여금 반입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10) EU 권외 사업자가 EU 권내 개인에게 위조상품을 송부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해당 위조상품을 세관에서 수입금지 판단하고 있음

11) (미국) 위조상품의 개인사용목적 국내반입은 미국 상표법상 ‘거래상 사용(use in commerce)’이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수입이 가능함.

※ 미국 상표법 제1114조, 미국 관세법 시행규칙 제148.55조

12) 「상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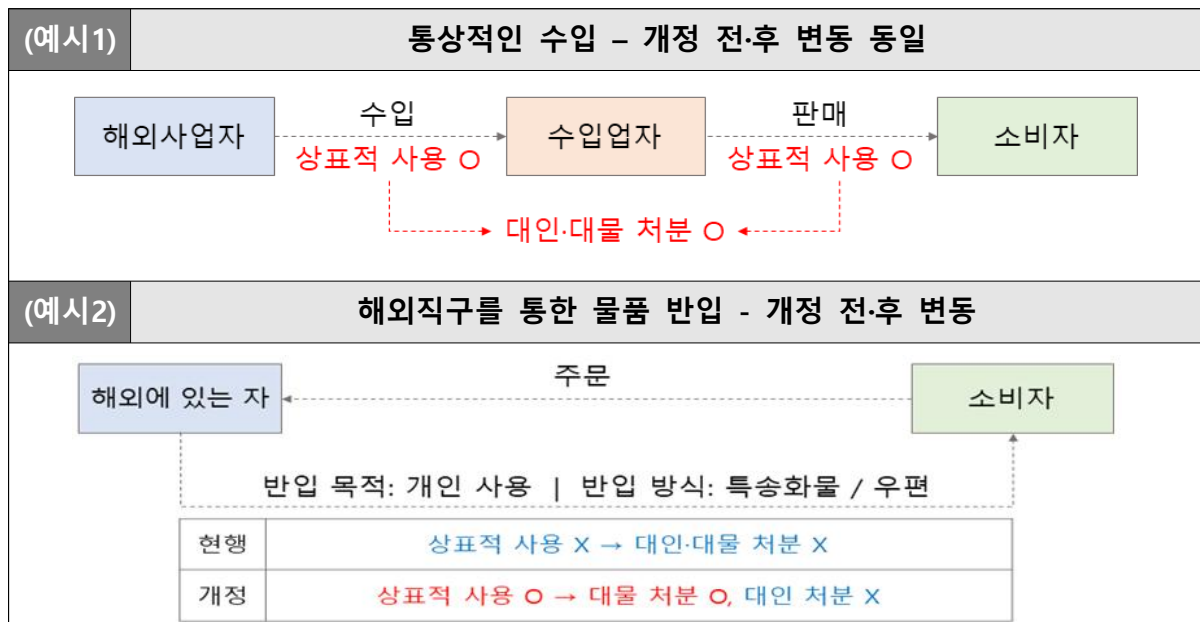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로써 위조상품 해외 직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조상품의 유통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해외 직구 방식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보류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 통상적인 수입과 해외 직구에 의한 물품 반입의 차이



자료: 특허청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다만, 개정안이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 주체는 ‘외국에 있는 자’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상표의 사용 행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상표법」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위조상품의 해외 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적용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원안가결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

####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법률 제 호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br>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10. (생    략)<br>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br>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br>행위를 말한다.<br>가.·나. (생    략)<br><u>&lt;신    설&gt;</u><br><br><br><br><br>다. (생    략)<br>② ~ ④ (생    략) | 제2조(정의) ① -----<br>-----.<br>1. ~ 10. (현행과 같음)<br>11. -----<br>-----<br>-----.<br>가.·나. (현행과 같음)<br><u>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u><br><u>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u><br><u>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u><br><u>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u><br><u>행위</u><br>라. (현행 다목과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 |